

36. 포르투갈(Portugal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35년(원래 1919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)
- 현행법 : 1980년(비기여제, 사회연금법), 1980년(사회연금), 1990년(유족연금), 1994년(유족급여), 2007년(일반사회연금법), 2007년(사회보장), 2009년(장애), 2009~2011년(기여제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
 - ※ 2018년 1월, 새로운 사회부조형 장애급여(사회급여 포함)가 도입되어 장애 사회연금을 대체함. 급여의 일부 요소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음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연간 총소득이 월 사회급여액의 6배 이상인 근로자 및 자영자
 - 임의적용 : 연간 총소득이 월 사회급여액(€428.90)의 최고 6배인 자영자, 다른 강제 기여형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자
 - 특별제도 : 단계적으로 일반제도로 통합 예정
- 사회부조 :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카보베르데, EU 국민을 포함한 포르투갈 거주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월 소득의 11%
 -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34.75%중 노령급여에 20.21%, 장애급여에 4.29%, 유족급여에 2.44% 배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액, 상한액 없음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모성, 직업병, 실업급여의 재원이 됨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
 - 월 기준 소득의 29.6%, 특정범주의 자영자는 34.75%(자영업자 및 유한회사 기업주,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)
 - 보험료 부과 목적의 기준소득은 사회급여액(€ 428.90)의 1~11배에

달하는 소득 범위에서 자영자가 선택

- 보험료는 질병, 모성, 산재급여의 재원이 되며 특정범주 자영자의 경우, 실업급여 또한 재원이 됨
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• 사회보험 : 임금지급총액의 23.75%

-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자영자의 월 기준소득의 10%(사용자로부터 총 연간소득의 80%를 받는 경우)
-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34.75%중 노령급여에 20.21%, 장애급여에 4.29%, 유족급여에 2.44% 배분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액, 상한액 없음
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모성, 직업병, 실업급여의 재원이 됨
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 :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재원으로 조달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66세 4개월 도달자; 보험료 납부기간이 48년 이상인 60세 도달자(15세 이전 당연적용 가입한 경우 46년 이상)
- 광부, 항만근로자, 어부, 상선 선원, 항공교통 관제사, 무용수 등 특정범주 근로자는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 퇴직가능
- 연간 120일 이상 소득 신고 필요, 소득신고 120일 미만의 기간들도 합산하여 1년의 가입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음. 가입자가 일반제도 하에 1년 이상의 소득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및 해외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충족된 가입기간을 보험료 산정 시 고려
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- 조기연금 : 60세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자
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기 가능
- 실업 노령연금
 -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62세 실업자에게 연금지급
 - 납부기간이 22년 이상인 57세 실업자에게 연금지급

- 57세 이후(납부기간이 15년 이상) 또는 52세 이후(납부기간이 22년 이상) 실업했어야 하며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없어야 함
- 부양배우자 보조금: 1994년 1.1 이전 처음 연금을 받은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
- 장기요양보충수당
 - 1급 의존도(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) 또는 2급 의존도(가입자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심각한 치매를 앓는 경우)인 자에게 지급
 - 1급 의존도의 경우 가입자의 월 소득은 €600를 초과할 수 없음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66세 4개월이며 기여형 노령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
 - 소득조사 : 월 소득은 독신자의 경우 월 사회급여율(€428.90)의 40%, 부부인 경우 6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장기요양보충수당
 - 1급 의존도(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) 또는 2급 의존도(가입자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심각한 치매를 앓는 경우)인 자에게 지급
 - 1급 의존도의 경우 가입자의 월 소득은 €600를 초과할 수 없음
- 노령연대보충급여(소득조사)
 - 정년연령에 도달한 노령,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지급; 사회연금 수급자(2018년 9월까지)에게 지급; 사회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장애연금 수급자(2018년 10월부터), 가입자는 청구 전 최근 6년 이상 연속 국내 거주해야 함
 - 소득조사 : 연간소득이 €5,175.82 미만이어야 함(부부일 경우 €9,057.69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65세 미만이고 납부기간 3년 이상의 완전영구장애(소득능력을 100% 상실)를 가진 자 또는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분장애(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)를 가진 자
 - 연간 120일 이상 소득 신고 필요, 소득신고 120일 미만의 기간들도 합산하여 1년의 가입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음. 가입자가 일반제도 하에 1년 이상의 소득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및 국외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충족된 가입기간을 보험료 산정 시 고려
 - 특수장애연금은 보조장치 도움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영구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됨
 - 장기요양보충수당
 - 1급 간호대상(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

필요한 경우) 또는 2급 간호대상(가입자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심각한 치매를 앓는 경우)인 자에게 지급

· 1급 의존도의 경우 가입자의 월 소득은 €600를 초과할 수 없음

- 장애연금은 65세에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• 사회연금(소득조사)

- 18세~정년연령까지이며 장애 정도가 최소 60%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함

- 장애 보조금(소득조사) : 빈곤층으로 평가되어야 함

- 장기요양보충수당

· 1급 간호대상(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) 또는 2급 간호대상(가입자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심각한 치매를 앓는 경우)인 자에게 지급

· 1급 의존도의 경우 가입자의 월 소득은 €600를 초과할 수 없음

- 사회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송금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납부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이어야 함

- 수급 가능한 유족: 배우자, 이전 배우자, 또는 사망자와 2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배우자, 18세미만 자녀(학생일 경우 27세,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)

- 해외송금 가능

• 배우자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인 경우 지급됨

- 소득조사 : 월 소득은 독신자의 경우 월 사회급여율(€428.90)의 40%, 부부인 경우 6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• 고아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인 경우 지급됨

- 소득조사 : 월 소득은 독신자의 경우 월 사회급여율(€428.90)의 40%, 부부인 경우 6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• 사망수당

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. 배우자, 사망자와 2년 이상 거주한 동거인, 위자료를 받은 이혼한 배우자, 18세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7세,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), 18세 미만 계자녀, 부모, 조부모, 또는 친척에게 지급됨

-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

• 장제비 : 사망수당 수급권자가 아닌 장례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사망자는 포르투갈 거주자였어야 함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각 연도별 기준소득의 2% 지급,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 최대 40년까지 지급되는 각 연도별 기준소득의 비율은 달라짐(5개의 소득단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2%~2.3%까지 지급됨)
- 기준소득은 총 가입기간(최대 40년)에 대한 월 평균소득으로 계산
- 경과기간(2017년까지) 동안, 연금은 이전 방식(최종 15년 중 최고소득 10년간 연평균소득의 2% × 총 조건충족 가입기간)이나 상기의 현재 방식 또는 혼합하여 산정 가능하고 총 연금액은 기대수명에 의해 결정됨
- 연금최저월액 :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(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€269.08, 31년 이상인 경우 €389.34까지)
- 연금최대월액 :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%
- 조기연금
 - 정년퇴직 전 청구시 각 개월당 0.5%까지 감액 지급
 - 납부기간 40년 이상 납부 시, 40년 이상의 각 납부연도에 대해 4개월의 감액 면제
 - 조기연금액은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 인수가 곱해짐
- 재정 지속가능성 인수는 2000년 65세 평균 기대수명을 연금 청구 전년의 65세 평균 기대수명을 나눈 수
- 연기연금 : 40년 가입자는, 정년~70세의 연기하는 각 1년당 증액지급; 15~24년 가입자는 1개월당 0.33%; 40년 이상은 1% 증액; 65세 이전에 완성된 40년 이상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0.65% 추가로 증액
- 실업자 노령연금 : 15년 이상 납부기간인 62세 이상인 자의 경우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됨. 22년 이상 납부기간인 5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연금은 0.5%까지 감소됨
- 배우자 보조금 : 월 € 37.80
- 장기요양보충수당(소득조사) : 1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03.51; 2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86.31 지급
- 지급횟수 : 매월 지급, 7월과 12월에 추가 지급
- 연금액 조정 :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사회연금(소득조사) : 월 € 207,31 지급됨(7월과 12월에 추가 지급)
 - 연대보충수당 : 70세 이하인 자에게 € 18.02 지급; 70이상일 경우 € 36.02
 - 장기요양보충수당 : 1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93.15; 2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75.96 지급

- 노령연대보충급여(소득조사) : 연소득과 연 보조금상한액의 차액 지급
 - 연 보충수당 상한액 : 독신인 경우 € 5,175.82, 부부인 경우 € 9,057.69
 - 연금액 조정 :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각 연도별 기준소득의 2% 지급,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 최대 40년까지 지급되는 각 연도별 기준소득의 비율은 달라짐(5개의 소득단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2%~2.3%까지 지급됨)
 - 기준소득은 총 가입기간(최대 40년)에 대한 월 평균소득으로 계산
 - 연금최저월액 :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(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€269.08, 31년 이상인 경우 €389.34까지)
 - 연금최대월액 :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%
 - 장기요양보충수당 : 1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03.51; 2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86.31 지급
 - 지급횟수 : 매월 지급, 7월과 12월에 추가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장애사회연금(소득조사) : 장애사회연금은 3가지로 구성됨; 기초사회연금, 보조금(2018년 10월부터 지급), top-up(2018년 10월부터 지급)
 - 월 기초사회연금액은 수급자의 장애등급과 기준소득, 기본 구성요소의 기준값에 따라 지급됨
 - 최대 기초사회연금액 : €264.32
 - 장애보충수당 : 월 보충수당은 수급자의 가계소득에 의해 지급됨
 - 장기요양보충수당 : 1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93.15; 2급 간호대상자에 대해 € 175.96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 연금
 - 사망한 수급권자의 연금액의 60%(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70%)가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
 - 35세 미만인 경우 5년간만 지급하거나 또는 자녀가 더 이상 고아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지급됨
 - 고아연금
 - 18세(학생 27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 미만 고아가 1인일 경우 사망한

- 수급권자 연금액의 20%, 2인일 경우 30%, 3인 이상일 경우 40%. 완전 고아로 1인, 2인, 3인 이상일 경우 각각 2배씩(40%, 60%, 80%) 지급
- 기타 수급권자(상기 수급권자 없을 경우)
 - 부모 또는 조부모,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유족 연금액 합계는 사망한 수급권자 연금액의 30%(1인), 50%(2인), 80%(3인 이상)
- 연금최고액 : 사망한 수급권자 연금액의 100%
- 지급횟수 : 매월 지급, 7월과 12월에 추가연금 지급
- 사망일시금(사회보험)
 - 월 사회급여액(€428.90)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배우자 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€ 207.01(월 사회연금의 60%)
- 고아 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고아의 수에 따라 사회연금의 20%(1인), 30%(2인), 40%(3인 이상) 지급
- 장제비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€214.93 일시금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·사회연대·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lidarity, and Social Security)
 - <https://www.portugal.gov.pt/pt/gc21/area-de-governo/trabalho/solidariedade-e-seguranca-social/>
 - 국가 사회연대 및 사회보장 사무국(State Secretariat of Solidarity and Social Security)을 통한 총괄 감독
- 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<http://www.seg-social.pt>
 - 국가연금센터(National Pension Center)를 통한 제도의 운영
- 사회보장재정관리청(Social Security Financial Management Institute)
 - <http://www.seg-social.pt/igfss-ip-instituto-de-gestao-financeira-da-seguranca-social-ip/>
 - 보험료 징수 및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